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안	104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4.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참여(참정권)를 확대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공포 1999. 8. 31, 시행 2000. 3. 2.)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영주시와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1,000인 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도 조례(안)(2000. 2. 12 도 감사 13130 - 118호) 사본 1부
- 나. 도내 각 시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추진상황 1부
- 다. 관련법령(발췌) 1부
- 라. 입법예고 결과 1부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주시와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0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인생략” 경상북도

우 702-702 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 950-2041 / 전송 950-2049
감사관실, 감사관식창순, 사무관, 황인동 담당자 박기호

문서번호 감사 3130 - 118
시행일자 2000. 12. (년)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시장·군수
참 조 기획감사실장(담당관)

선 결	시 장	기록부 자	
집 수	일자 시간 번호	2000.2.14 123	부 시장 장 담당관 공 람
처 리 과	기획부 담당관원	각부 담당 회장	
담 당 자	정종하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

1.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 제정에 참고할 사항과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공고문 등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니 공고문을 판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3. 6.까지 보고하기 바라며.

2. 각 시·군별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제정(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 각종 필요서식 마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 조례내용 1부

2.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 제정(안) 및 공고문 1부 끝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감사관(당연직으로 한다)
2. 국장급이상 공무원 또는 도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전문가
4.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시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경상북도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의 청구대상 여부 결정
2.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3. 이의신청 심사·결정
4. 유효서명의 심사·결정
5. 위탁 감사실시 여부
6.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13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제적위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및 이해 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도 감사실 감사담당으로 하며 시무직원은 감사실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을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 추진상황

[경상북도]

자 치 단체명	청구인 수		조례제정추진상황			비고
	비 율	인구수	진행상황	의회의결일 (예정일)	조례시행일 (예정일)	
경북도청	1/1000	2,032	입법예고중	3월 중	4월 중	
포항시	1/50	7,075	단체장결재중	4월 중	4월 중	
경주시	1/200	1,055	"	4월 중	4월 중	
김천시	1/100	1,108	조례안마련중	4월 중	5월 중	
안동시	1/100	1,374	"	미정	미정	
구미시	1/200	1,105	"	미정	미정	
영주시	1/97	1,000	조례규칙심의완료	4월 중	4월 중	
영천시	1/100	919	조례안마련중	미정	미정	
상주시	1/100	960	결재완료	4월 중	5월 중	
문경시	1/100	673	보례안마련중	미정	미정	
경산시	1/150	1,005	"	미정	미정	
군위군	1/50	512	단체장결재중	미정	미정	
의성군	1/100	626	입법예고중	3월 중	4월 중	
청송군	1/50	540	조례안마련중	미정	미정	
영양군	18/1000	329	입법예고중	3월 중	4월 중	
영덕군	18/1000	742	"	3월 중	4월 중	
청도군	1/50	867	조례안마련중	미정	미정	
고령군	1/50	391	결재완료	3월 중	4월 중	
성주군	1/100	404	조례안마련중	미정	미정	
칠곡군	1/60	1,113	입법예고중	3월 중	4월 중	
예천군	1/50	800	조례안마련중	미정	미정	
봉화군	1/50	685	입법예고중	3월 중	4월 중	
울진군	1/50	998	단체장결재중	미정	미정	
울릉군	1/50	156	조례안마련중	미정	미정	

관 련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 75호(2000. 2. 23)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계시판 공고, 유선방송
- 예고내용 : 별첨과 같음
- 예고기간 : 2000. 2. 24 ~ 2000. 3. 15(20일 이상)
- 제출의견 : 없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04호
- 의 안 명 :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실

2. 제정 이유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참여(참정권)를 확대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공포 1999. 8. 31, 시행 2000. 3. 2)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영주시와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1,000인 이상으로 함 (안 제2조)

4. 검토의견

영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감사청구제도"가 신설 시행(1999. 8. 31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 된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연서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은바
-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규정함.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00. 4.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